

# 제400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정기회) (안전조정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1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7)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
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2
- 조정위원장(조승래) 인사 ..... 2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 2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 2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 2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 2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 2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7) ..... 2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 2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 3

|                                                                  |   |
|------------------------------------------------------------------|---|
|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 ... | 3 |
|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3 |
|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            | 3 |
|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            | 3 |
|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            | 3 |
| 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 .....              | 3 |
| 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3 |
|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           | 3 |
|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           | 3 |
|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           | 3 |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 .....             | 3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3 |

(15시28분 개의)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정필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차 안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제가 조정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정필모 의사일정 제1항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조승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정필모 조승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조승래 위원을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승래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 ○ 조정위원장(조승래) 인사

(15시31분)

○조정위원장 조승래 안전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안전조정 신청이 제기가 돼서 구성된 위원회고 이 위원회가 신속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365)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407)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3346)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5248)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457)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15427)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8458)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

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32분)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  
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0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 겸 의  
견들을 한 말씀씩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부터 한 말씀……

○박성중 위원 별로 의견 없습니다. 별로 기분  
이 안 좋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정필모 위  
원님.

○정필모 위원 저는 이 법안이 여러 차례 과거  
부터 비슷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국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논의된 만큼 충분히 논  
의 절차는 많이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법안 심사를 하는데 신속, 신속  
하자는 것은 잘못하면 대충하자, 결론이 이미 성  
립돼 있고 달려가자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과거와는 달리 공영, 민영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있는 다음에 공영방송을 어떻게 꾸  
려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체  
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 취지에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논의·심의가 있지 않으면 과연  
이게 여기서 통과한다고 해서 법안으로 제대로  
성립되겠느냐, 법사위에서 또 한 차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  
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다음으로 운영찬 위원님.

○운영찬 위원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이  
법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수십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법제적  
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  
말 방송이 어떤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이 돼  
서 정치권에 의해서 방송이 왔다 갔다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  
지에서 이번 방송법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방송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  
다. 그러나 우리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어떤 큰 취지라는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  
서 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  
고 싶고.

이게 어쨌든 새로운 방송법 체계 또 방송사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  
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 출발점에서 더  
심도 있는, 나중에 이 법안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해 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다시  
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빨리 첫  
발을 확실하게 떼 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먼저 안전조정위 명단으로 된 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인데, 이 안전조정 자체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기는 한데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법 관련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논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21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방송이고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차 소위에서 논의된 것이 제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오늘 처리할 수도 있고요 길게는 90일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당한테는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부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결론을 내는 이야기고요. 야당은 반드시 이번 안에 처리한다, 시한을 두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방금 말씀드린 공정 방송,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서로가 해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하면서—소위에서 1차적으로 했지만—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서 안전조정위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가 처음에 간단히 했는데 전체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려고, 제가 나중에 하고 싶어서……

○조정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한 바퀴 더 돌리세요.

○박성중 위원 기회를 한 번 주시겠습니까?

○조정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언론인들은……

○박성중 위원 여기까지만.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러세요?

○박성중 위원 제가 과방위에 거의 한 5년간을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방송법 진행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안전조정제도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전조정위원회 자체의 취지가 이 안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90일간의 활

동기간도 보장된 건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날 두세 시간 만에 후다닥 처리하려는 것은 참 유감이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이런 방송법을 제기할 그런 자격이 되느냐? 좀 철면피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 야당일 때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명, 6명 그리고 3분의 2 특별다수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원 162명이 발의한 데 이어서 나중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 법안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들이 역사를 모르고 21대 들어와서 제가 한 것을 우리 당이 반대해서 전혀 못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2년 동안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내동 하고 싶어서 법안까지 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부 미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을 진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것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제시한 25인 이사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논의해서 하자는데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데, 25인 이사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어느 국민한테 돌려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 법이라는 것은 양쪽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 지지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공약수로 양쪽이 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법안이 되어야지 한쪽만 만족하는 법안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통과시키지

왜 그때 안 시키고 이제 와서 야당이 되니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여하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계속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안전조정제도에 맞는 쪽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안전조정제도 제안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1시간 만에 제안했으니까 지금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나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영찬 위원** 저도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중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정위원장 조승래** 윤영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론에 다 그냥 공개해요?

○**박완주 위원** (고개를 끄덕임)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러시지요, 뭐. 그렇시다.

○**윤영찬 위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킨 사람을 어떻게 방송사 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박성중 위원** 다 나왔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 당시에 법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특별다수제를 했을 때 특별다수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출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아니, 이게 합의가 안 될 게 분명한데 그러면 방송사 사장을 아예 임명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자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2020년에 정청래 의원이 6월 11일 날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필모 의원님이 11월 달에 발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문재인 정부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법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법을 그리고 이 국회의, 정치권의 입김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보자라고 해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정이 안 됐잖아요, 2소위에서. 상정이 안 되고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었지만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이제 상정이 됐고 상정이 된 상태에서, 박성중 위원님 5년 동안 계셨지

만 이 내용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몰라서 못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고,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윤영찬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제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반기 때 분명히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 제가 첫 법안을 내왔던 것이 2020년 1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소위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 그리고 두 분 간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 법안을 빨리 상정해서 심의는 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어떤 법안도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 책임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아니, 소위원장께서 상정을 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상정을 해 놓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직능단체,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가 어느 특정 노조의 산물이 아니에요. 거기 회원들 중에는……

○**박성중 위원** 사례 엄청 많습니다.

○**정필모 위원** 아니, 말씀 좀 들으세요.

그 회원들 중에는요 소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본부노조 노조원들도 있고, KBS나 MBC의 제2노조 노조원들도 있고 제3노조 노조원들도 다 속해 있는 겁니다. 기술인협회도 마찬가지로, PD협회도 기자협회도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언론노조가 장악한 단체입니까?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걸면요 그것 문제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박성중 위원** 걸라 그러세요.

○**정필모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박성중 위원** 구체적 사례는 엄청 많고요.

○**정필모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박성중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지……

○**조정위원장 조승래** 들어 보세요.

○**정필모 위원** 미디어 관련된 학회요? 언론학회, 방송학회 그다음에 지역 언론학회가 어떻게

친민주당입니까. 그 사람들 거기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박성중 위원 그쪽 사람이 주도하고 있어요.

○정필모 위원 아니, 제 발언 땀지 마세요.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수적인 분이 언론학회장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어요. 방송학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필모 위원, 우리 KBS 때 진미위 하고 다 알잖아요.

○윤영찬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필모 위원 아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요, 한번……

○박성중 위원 나는 두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안 했어요.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정필모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나한테도 기회 더 주세요, 거기에 하나씩 반박할 테니까.

○정필모 위원 그다음에 다른 시청자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선임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성중 위원 정필모 위원, 나는……

○정필모 위원 훈계하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박성중 위원 정필모 위원! 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정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성중 위원 손 그거하지 말고.

○윤영찬 위원 위원장님.

○정필모 위원 훈계하듯이 말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이것은 토론을 하시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만하세요.

○정필모 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박성중 위원 가만있어. 나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정필모 위원 발언 끝난 뒤에 얘기하세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언론인들은 죄송합니다.

충분히 취재하셨지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개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필모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중 위원 당신은 진미위에서 어떻게 활동했어!

○윤영찬 위원 뭐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필모 위원 뭐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진미위……

○박성중 위원 이 사람이 지금!

○윤영찬 위원 진미위가 왜 여기서 나와요!

○정필모 위원 여기서 진미위가 왜 나와!

○박성중 위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있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윤영찬 위원 자격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이야!

○정필모 위원 당신이 자격이 안 돼!

○윤영찬 위원 뭐 하는 거야, 지금!

○박성중 위원 뭐 하는 거야, 지금!

○윤영찬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조정위원장 조승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되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나 인신공격하는 언사들은 정말로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회의 운영을 했던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오늘 새삼 확인하는 것은 이게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러니 결론을 계속 못 내 왔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숫자를 확대하자,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추천할 것이냐, 사장 선임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사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우리 회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 회의 정회 후에 벌어졌던 이 감정적인 대립과 대결이 위원회 회의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갈등의

끝이 더 깊어질 것이 솔직히 염려되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회의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지금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다 위원회 대안들입니다—방문진법 그리고 교육공사법, 방통위 설치법 등 이 4개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고자 하니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언론인도 있고, 보좌진들도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각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불쌍사나운 모습들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오늘 안전조정위원회만 하고 말 분들도 아니고 향후 2년 동안 남은 기간 함께 과방위에서 활동하셔야 될 위원님들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든 야든 국민이든 종사자든 모든 분들이 공정 방송 그리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공정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여 년 넘게…… 논의 과정이 진짜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사 구성, 사장 구성, 임원 구성, 2개 조 또는 3개 조 문제가 지금까지 과방위 활동 전체의 절반을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전반기에 열심히 해주신 조승래 위원님이나 박성중 위원님 노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했지만 이 몇 개 조항 문제 때문에 전체 과방위 운영에도 걸림돌이 됐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법이 여당일 때는 전부 다 거부하고 싶은 법이고 바뀌면 또 야당이…… 이런 평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은 내 주고, 저는 상임위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조정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을 아직도 갖고 있습

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 자체가 거부권 하겠다, 신속 처리하겠다 이 논란이 되면 저는 사실 생산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부에 나왔던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여튼 처리된 의견 중에 여당 내에서 자꾸 몇몇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항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모아 가지고 전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논의를 더 진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논의하셨으니까 여쭙보는 거예요. 이게 11명 21명, 처음에는 30명이었는데 이 21명에 대해서—물론 찬반이 있겠지만—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고 만족하는지, 거기도 찬반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처음 논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누구 편이니 마니 이런 문제는 둘째 치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이 교환됐는지 그게 저는 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위원장님이나 논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저도 제 의견 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 부분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사 숫자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사장 추천 과정,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것이었고 그 다양성에는 성별, 지역별 그다음에 전문분야별 이렇게 추천을 하자는 그런 취지를 담았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전문 분야를 포함할 것이냐에서 전문 학회와 그다음에 종사자단체 그리고 시청자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포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권의 입김을 최대한 최소화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사 구성이 설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는 이념적 판단이라든지 정파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를 한다기보다는 전문 학회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영방송의 원래 취지에 맞게 정파적 운영이라든지 편파적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당사자 단체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밝혀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당사자들도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예, 그렇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박완주 위원께서 거부권 관련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에서 제가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지 원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빨리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빨리 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숙고·배려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론이지 원인 제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거부권을 건의하는 그런 사태가 안 오기를 원하지요. 왜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날림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파국이 뻔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자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권력뿐만 아니라—늘 말씀드리지만—경제권력, 정치·경제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송의 환경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특정 세력의 잇따른 조직화 그리고 정치 팬덤 현상의 심화 등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책무·역할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 방법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것은 직접 투표하거나 아니면 국민 대표에게 주는 것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단체에게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시간에 쫓겨서 고치는 데 몰두해서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 글자 그대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치기, 정청래 위원장이 ‘남의 물건을 찹싸게 채어 달아나는 것이고 방송법이 물건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네이버 국어사전 보면 뜻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3번에는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왜 1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1번 2번 3번 다 보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왜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계속 발언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안 주셔서 가지고 일단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치기 뜻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그것은 파국이 뻔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심의·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의사진행이요.

조항이 많지 않으니까요, 많아 봐야 세 조항이예요. 그러면 그냥 소위원장님이 축조심의를 해주세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 의견을 듣고 찬반……

○조정위원장 조승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박완주 위원 그래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방송법 개정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이 정신에 의거해서 돼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 경과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우선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서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3인 이내의 복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9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이사의 설치 및 운영)에서 이사회는 11인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당이 몇 명 추천하고 이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대표성을 고려해서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도 없지만 임의적으로 운영했던 국회교섭단체 의석수에 비례해서 5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이것은 지역방송에서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는 겁니다—그다음에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그리고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추천하는 2명 해서 6명으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의 경우에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을 1명 이상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성이 2명 이상 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2명 이상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가 거의 50% 정도의, 5 대 5 정도의 남녀 성비가 돼 있어서 이렇게 조향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성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적인 의결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 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이것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이것만 있을 경우에는 사장 선임이 계속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 이내의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30일 이내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50% 이상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다수득표자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9조(이사의 기능)에 있어서 50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기능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조의2 신설된 조항인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 특정 성이나 특정 연령, 특정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장후보추천은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한다.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에 추천위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사장 임명에 공백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방송법과 관련된 대강의 내용들이고, 방문진법도 이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교육방송법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3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에는. 그런데 교육방송법에는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0쪽에 보면 2호에 있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6명에서 3명으로 조정을 하고, 5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1인 그렇게 해서 교육 전문성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조정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이게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이사를 확대하고 확대된 이사에 대해서 추천 경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국회는 사실 법에도 없는 일종의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윤두현 위원 제가 먼저 좀 하면……

○조정위원장 조승래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이게 간단하다고 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간단하다고 얘기하는지……

이사회가 21인으로 늘면 이사의 역할이 뭘 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느 일반 기업을 봐도 이사회가 21명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른바 효율성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요.

그다음 공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영방

송의 공적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엄청 달라졌는데, 그냥 공적 책임인데 21명으로 늘린다? 이것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그리고 독립적·자율적 운영의 주체는 누구냐? 사장인가요? 그러면 사장은 전횡해도 되나?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다음 언론의 자유·독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기계적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게 가야 된다, 이게 없이 그냥 갑자기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100인은 어떻게 구성하지요? 구성 누가 하지요? 현 사장이 하시나요? (「이사회가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현 이사회가 하나요? 그러면 우연히 이사회에 들어간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해 가지고 자기가 추천위원회를 자기 편한 대로 짤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어느 특정 회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것도 없이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세상에 완벽한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 목표가 어쨌든 정치권의 여야 관계에 따라서 방송국의 권력관계가 함께 따라가는 이 구조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의 정권도, 방송사의 정권도 바뀌고 나머지는 또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면서 사실은 다양한 세력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 대표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추천하는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이사회를 물리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정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100명에 대해서 누구도 영향력을 남발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사장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데까지가 끝입니다. 다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을 가져야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견제 구조, 권력분산 구조 이 정신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정권에 따라서 방송사의 권력이 함께 종속돼서 따라가는 이 구조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사의 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구성원, 이사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조금씩 바꿔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큰 틀을 전환하는 전환기라는 시대적 특징이 있다. 그러니 이 전환기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다음에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안전조정위원회의 본뜻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숙의를 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라 또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라 이런 뜻으로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90일간 기간을 준 것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배려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두세 시간 만에 후다닥 하려는 것은 전혀 안전조정위 취지에 맞지 않다, 우선 첫 번째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법안이 이제까지 논의돼 온 거니까 엄청 쉬운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면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21명? 여러분, 민주당은 21명에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21명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21명짜리 이사회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해 보지 않은 새로운 미답의 길을 가는 겁니

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21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입시다마는 21명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을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하나하나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국회 교섭단체 5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송통신위원회 5명 상임위원 중에 3명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지금 KBS 시청자위원회 누가 임명합니까? 보면 뻔한데, 지금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 보면 느낌이 와닿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 전문성을 고려해서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지금까지 이분들이 활동했던 발표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는 전혀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민주당 자체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키겠다? 통과시키십시오. 국민을 위한 방송, 과연 국민을 위한 방송이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여러분을 위한 방송 아니겠느냐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특정한 국민을 위한 방송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리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송법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우리도 노력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숙의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과시킬 의도가 있고 오늘 내로 한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방통위 관계관 나와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성중 위원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깐……

○**조정위원장 조승래** 아니, 지금 이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는 학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양한열입니다.

지금 현재는 규칙으로 정해진 학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별도로 방통위원회가 규칙으로 하든 합의를 하든 결정해야 됩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통상 방통위가 학회의 추천을 받는다면, 예를 들면 지금도 방통위원이나 KBS 이사라든지 추천을 주 받을 때 학회나 이런 데 추천을 받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저희들이 학회 추천받는 것은 각종 허가라든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 할 때 학회 추천을 받아 갖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거기서 추천받는 학회는 어디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심사마다 다릅니다마는 주요 학회는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그다음에 가끔씩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지역언론학회, 미디어경영학회 이렇게 그때마다 다릅니다만 주요 학회 순으로 이렇게 보통……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렇겠지요. 어쨌든 언론학회, 방송학회, 지역언론학회, 주로 이게 대표적인 학회겠네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주요 학회는 그렇고요, 심사마다 달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방통위가 학회장 선출하거나 학회 운영을 막 좌지우지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학회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리고 위원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딱 찍어서 ‘이 사람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추천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성중 위원** ABC입니다. 자꾸 그것을 이야기

하면 끝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양한열 국장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의 임기가 내년 8월이면 대부분 다 교체되는 상황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사실상 그때 되면 말 그대로 지금의 구조로 여야가 3 대 2로 바뀌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법상 그렇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예.

○**정필모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회 추천을 할 때, 그 학회를 선정할 때 결코 지금 야당인 우리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들이 그때 되면 이미 임기가 다 끝나서 교체될 때는 방송통신위원들의 구조가 여야 3 대 2로 바뀐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학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추천하는 것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방통위에서 누구를 찍어서 어떤 교수를 추천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인 선정할 때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배심원단을 인구통계 학적인 소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어느 특정 정파에 편향된 사람들이 한번에 다 몰려서 구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도록 다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기우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정말 나타나면 그때 가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완벽한 법안이라는 건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논란, 소위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니 방송사 내, 언론사 내 권력이 바뀌는 것이 아주 좋지 않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서, 회사가 발전하는 데 기여해서 회사가 주는 재원을 받아 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 안의 특정 세력이 영구히 장악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게 훨씬 더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견제와 균형이 되게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21인으로 늘리면 과연 그게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추위 100인 구성, 100인으로 구성해서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한다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책임자가 없는 구조하에서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사실상 오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회사 찾아보면 이런 사례가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 그렇지요. 사람 하는 일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 기우라고 할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3법 어땀어요?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걱정하는 부작용보다는 기대한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보고……

그리고 우리도 21인으로 늘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이사회가 구성돼 갖고 21명의 이사가 와 가지고 회사 경영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난상토론을 해 봐야지요. 그것도 없이 할 수 있다? 저는 역사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통위법에 보면 11인 7 대 4, 이게 여야가, 그렇게 추천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했다 하는데 저는 그것을 포괄적 위임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포괄적 위임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것을 지금 당장 안 고치면 큰일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사장 뽑는 시간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 중의 하나는 국민의 대표에게 맡기는 것이고 어떻게 스스로 정화해서 민심, 민의를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 조선 8조금법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과연 그게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따져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빨리 신속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도 이것 가지고 충분한 내부 토론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살펴볼 시간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저도 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은 방송법 건드리는 게 보니까 2개 조거든요, 전체 조 중에. 이것 들으셔야 되는데요, 속기록을 위해서가 아니고.

4조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하시는 제5조의 방송의 공적 책임 누가 할 거냐. 공정성과 공익성, 4·5·6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건드린 게 결국은 이사, 이사회, 사장—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이것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의 이유인데……

제가 공통점을 보니까요, 하여튼 여당이었을 때는 안 하려고 하고 야당이었을 때는 하자고 하고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입장이에요, 여야는 또 바뀌는데.

다만 여기 안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조정위원이신 박성중 위원님께서 20년도 8월 31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보니까 우선 이사회 이사를 포함해서 11인에서 13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 교섭단체 그러니까 여당한테는 7명 그 밖에한테는 6명,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합의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이사 추천을 갈라먹기로 딱 7 대 6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논의해 왔던, 안전조정위에 왔던 다양한 세력들이 또는 계층들이 추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방식은 아니다, 이것은 정권 바뀌면 언론은 계속 뒤집히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늘리는 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건가는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여당 간사님도 적정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런데 국회 추천으로 100% 하는 것은, 이 논의 지점에서 제 의견은 이 방식은 제일 후진……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아까 얘기했던 자율·독립, 4조의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 관여하면 안 된다’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사회 기능 중에 여당 간사님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두자라고 했습니다. 100명인지 몇 명인지 숫자는 적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추천위원회의 숫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절차·방식은 꼭 보니까 비슷해요,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안전조정위에 온 것이 이사회 숫자, 누가 추천할 거냐, 사장추천위원회 절차 이 세 가지거든요. 차이는 딱 누가 추천할 거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100% 여야가 추천하는 것은 개악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시키는 건데, 지금 말씀 요지는 이게 특정 정파, 계파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것이 적확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진지하고 깊게 논의해 봐야……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려된다, 조금 더 보완할 게 뭐다 이런 의견이 더 생산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장추천제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다면 여기도 꼭 100명이 답은 아니니까 적정한 절차와 그것을 투명하게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쪽 논의돼 왔던 과정들에 근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신들을 어떻게, 원칙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래서 지금 실제로 KBS

이사회나 방문진 이사회 보면 정치권에서 추천한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경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정파적으로 불리한 특정 보도에 대해서만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목격해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이사회를 국회에서만 7 대 6이든 6 대 7이든 추천할 경우에는 사장 선임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사회가 거의 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고.

숫자가 많아서 운영이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면서 훨씬 더 실효적인 운영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완주 위원님이 잘 정리해 준 것처럼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19대 국회 마지막, 20대 국회, 21대 국회, 그러니까 세 번의 국회를 거치면서 여야가 바뀌어 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이것이 야당 되니까 한나라는 취지보다는 그것은 여당 시절부터 계속 제안을 해 왔고 논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솔직히 여기서 더 논의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괜히 갈등만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국회의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더 수정하고 조정하고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지만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한 바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찌 됐든 협상 자체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 안전조정위를 통해서 과방위원을 떠난 다음에 원내대표나 또 법사위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의 과정들을 할 때 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놔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안전조정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과방위를 통과하는 부분들은 그 논의에 대한 출발과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빨리 처리를 하고 이후에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두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체적 안이 이러저러한데 저는 공영방송의 개념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안 유지가 제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안전조정위원회가 열린 지 몇 시간 만에 여기서 처리하자라는 것은 통과의를, 이른바 실질적인 논의가 아닌 형식 갖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예, 떠나시는 것은……

지금 박성중 위원님도 가신 겁니까?

○**윤두현 위원** 그분은 저한테 보고를 안 해 가지고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래요? 가신 겁니까?

(「가셨어」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전조정 신청을 해 놓고서 그렇게 다들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안전조정 신청을 왜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이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방통위는 수용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혹시 방통위에서는 우리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통위의 권한을 받지는 않고 실무자로 참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힘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전체회의 열 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들었던 위원회의 견해가 유지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조정위원회 신청해 놓고 할 말 하고서 가시는 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영찬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박완주 위원** 나가셨어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안전조정 신청을 해 놓고서 그냥 자기들 할 얘기만 하고 나갈 거면 도대체 왜 신청을 한 겁니까?

○**박완주 위원** 조별 축조심의를 하자, 몇 조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조정위원장 조승래** 축조심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지난번 소위원회도 사실상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 직전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여당 위원들께서. 그런데 나가신 것은 우리가 강제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표결처리한 것을 가지고 날치기라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토론해서 표결 처리를 오늘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될 결정을…… 본인들이 나가서 놓고서 나중에 표결 처리하면 날치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리력을 동원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했습니까? 강제로 나가라고 했습니까? 저는 날치기라는 주장이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당초에 오늘은 위원장 선출과 안전 상정 그리고 위원들의 인사 수준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과정에서 얘기되고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되는 방향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논의를 하면서 접점이 정리되거나 이견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진다고보다는 계속 정치적 공방만 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숙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숙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아니, 그전에 국민추천위원회—여쭙보는 거예요—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인회를 만드는,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필요한 건가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게 공론조사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KBS 사장

할 때 아마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번 속의 과정을 거쳤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할 때 국민 공론조사 방식의 추천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한 100인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성별, 연령, 지역별로 안배가 되면서 특정 연령이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정파, 특정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적절한 정도의 최소 단위를 100명으로 봐서 그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6항에 보시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법에는 ‘100명으로 구성한다’니까 구성은 그렇게 하고 그것에 따른 구성과 운영…… 이것이 좀 서로 충돌될 수도 있겠네요, 6항하고 2항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100인은 고정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박완주 위원 그것 내부 구성이지요, 인원 수가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박완주 위원 지역, 연령, 성별 이런 것과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한다 이런 조항이지요? 그래요.

○정필모 위원 참고로 사추위 구성을 할 때 열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추위를 그렇게 구성하다 보면 또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그래서 100명으로 구성해 놓고 연령, 지역, 성별만 감안해서 흔히 얘기하는 공론화 위원회에 주고 인구통계학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정파적 색깔이 들어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다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가 원전과 관련된 공론화조사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MBC 사장 선출 한 두 번, KBS 사장직도 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없이, 거기서 무슨 정파적으로 바이어스된 사람들이 한번에 몰렸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이,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운영해 봤던 외부 업체들한테 이사회에서 맡겼습니다. 지금도 이사회가 여야가 추천은 하지 않지만, 여야 안배

식으로 돼 있지만 그것만큼은 합의를 한 거지요.

○윤영찬 위원 위임을 한 것 같아.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하는데, 지금도 KBS 사장 선임을 할 경우에 30%가 반영이 되지요?

○정필모 위원 40%.

○윤영찬 위원 40%가 반영이 되지요?

○박완주 위원 그런 운영과 저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그걸 또 정해요?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예,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없어요.

○박완주 위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지.

○조정위원장 조승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법안소위 세 번 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첫 번째 카카오 먹통 방지법 할 때는 안 들어오셨고 방송법 논의할 때는 두 차례 회의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해 가지고 이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가 이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의결하겠다고 문자라도 보내 주십시오. 언제까지, 10분까지 오라고 위원장님이 해서……

○조정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잠시 의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지금 5시니까요, 5시 15분?

○윤영찬 위원 예, 15분.

○조정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조정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공지를 했는데도 참석을 하지 않은 위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오늘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으므로 방송법(대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정청래 의원, 박성중 의원, 정필모 의원, 전해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6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정필모 의원, 전해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3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박성중 의원, 정필모 의원, 전해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4건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6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박성중 의원, 정필모 의원, 전해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4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1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조정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정 신청을 한 분들이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한창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를 더 지속하지 않고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마무리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님, 방통위 관계관들 또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박 성 중   박 완 주   윤 두 현   윤 영 찬  
정 필 모   조 승 래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김   건   오  
입 법 심 의 관   김   충   섭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양   한   열  
방 송 정 책 국 장